1. 개정이유

항공안전 자율보고의 보고내용,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보고 대상자 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, 보고기관 및 연락처 변경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안전 자율보고 내용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현행화(안 제2호)

나.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확대(안 제3호)

다.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보고기관 명칭 및 연락처를 현행화(안 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 제59조 및 제6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호가목3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법 제59조,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

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(이하 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”라 한다)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

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
항공기사고·항공기준사고·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

1) 항공기 기장(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)

2) 항공정비사(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·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)

3) 항공교통관제사(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)

4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·유지하는 자

5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

6)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

7)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
가)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,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

나)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

제3호나목 중 “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”을 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”로, 같은 목 중 “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”를 “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”로 한다.

제4호가목2)가) 본문 및 같은 2) 나) 본문 중 “별표 3”을 각각 “별표 20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”를 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”로, 같은 목 중 “발생될 것이 예상되는”을 “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”으로 한다.

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보고기관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보고기관</th><th colspan="2">연락처</th><th>주소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항공안전
의무보고</td><td rowspan="3">국토교통부
항공안전
정책과</td><td rowspan="2">항공기
사고
및
항공기
준사고</td><td>주간
(09시~18시)</td><td>TEL: 044)201-4682
FAX: 044)201-5628
E-mail: fsdiv01@korea.kr</td><td rowspan="3">30103
세종특별자치시
도움6로 11
정부세종청사
국토교통부
항공안전정책과</td></tr>
<tr><td>야간
(18시~09시)
및 공휴일</td><td>TEL: 044)201-4672(당직실)
FAX: 044)201-5700
E-mail: fsdiv01@korea.kr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항공안전장애</td><td>TEL: 044)201-4682
FAX: 044)201-5628
E-mail: fsdiv01@korea.kr</td></tr>
<tr><td>항공안전
자율보고</td><td>한국교통
안전공단
항공안전처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TEL: 054)459-7391
FAX: 054)459-7149
E-mail: kairs@kotsa.or.kr</td><td>39660
경상북도 김천시
혁신6로 17
한국교통안전공
단 항공안전처</td></tr>
</table>

7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보고사항	2. ------
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	가. ----------
1)·2) (생 략)	1)·2) (현행과 같음)
3) 법 제2조제10호, 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항공안전장애	3) 법 제59조,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
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	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·상황·상태 등(이하 “항공안전위해요인”이라 한다)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	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(이하 “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”라 한다)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
3. 보고 대상자	3. ---------
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	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
1) 항공기사고·항공기준사고·항공안전장애를	항공기사고·항공기준사고·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

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가) 항공기 기장(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) 나) 항공정비사(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·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) 다) 항공교통관제사(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) 라) 공항시설을 관리·유지하는 자 마) 항행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 바)	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1) 항공기 기장(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) 2) 항공정비사(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·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) 3) 항공교통관제사(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) 4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·유지하는 자 5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

	항행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자 6)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7)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)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,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 나)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
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(항공종사자 등 관계인, 항	나. ----------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---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----------

공기탑승·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)	----------
4. 보고시기	4. ------
가. 항공안전 의무보고	가. ----------
1) (생 략)	1) (현행과 같음)
2) 항공안전장애	2) ---------
가) 규칙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: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(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). 다만, 제6호가목,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	가) -- 별표 20의2 ---- ----------.
나) 규칙 별표 3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: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. 다만,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	나) -- 별표 20의2 ----

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.

나. 항공안전 자율보고

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. 다만,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.

5. 보고기관

--------. --------

---------.

나. ----------

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-----

---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---. ----------

----------.

5. 보고기관

구분	보고기관		
항공안전 의무보고	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정책과	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	주간 (09시~18
			야간 (18시~09 및 공휴
		항공안전장애	
항공안전 자율보고	한국교통 안전공단 항공안전처	-	

7.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7.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